

바른사회시민회의 20대 총선기획
'유권자가 변해야 한다' 시리즈

제19대 국회
대한민국 정체성 보호와 거리가 있는 법안들
- “유권자가 변해야 한다3” -

2016. 2.

바른사회시민회의
이옥남 · 김도연



I 들어가는 말

우리나라는 헌법 제1장 총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명시함으로써 정치적으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채택하고 있다. 헌법 제111조에서는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경제적으로는 시장경제체제를 채택하고 있다. 즉,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가 근간을 이루며, 법치를 통해 이러한 헌법적 가치를 지켜왔다. 또한 광복 이후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가치를 통해 민주화와 산업화를 동시에 이뤄낸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자랑스러운 나라다.

우리나라 헌법에 의하면, 입법권은 국회에(제40조),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제66조 4항),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제101조)에 속한다고 하여 3권 분립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국회는 3권 분립의 한 축으로 자유민주주의체제와 시장경제의 구현을 위해 입법활동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19대 국회는 헌정 사상 최초로 정당이 반국가이적활동을 한 혐의로 해산된 불명예를 안게 되었다. 이를 계기로 바른사회시민회의는 19대 국회 입법 활동 중 대한민국의 정체성 유지와 거리가 있는 법안들에 대해 조사하고 20대 국회에는 국회가 바로 선 국가 정체성으로 3권 분립의 한 축으로 제대로 된 역할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조사를 실시했다.

II 본론

1. 대한민국 정체성 관련 특이법안들

민주화 이후의 국회인 13대 국회를 기점으로 우리나라 국회는 민주주의의 발전 속에서 부침을 거듭하여 19대 국회(2012. 5 ~ 2016. 5)까지 이어왔다. 우리나라는 민주화는 이루었지만 분단이라는 특수상황, 즉 적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안보는 국가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필수적으로 확보되어야 할 사안이다. 19대 국회는 헌정 사상 최초로 반국가이적행위를 한 정당이 법의 판결에 의해 해산되어 입법부의 역할에 대한 국민들의 경각심이 한 층 더 높아진 국회였다. 또한 북한은 2006년 제

1차 핵실험을 실시한 이후에도 제19대 국회인 2013년에 제3차 핵실험, 2016년에는 제4차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 무력도발을 일삼고 있다.

이렇게 우리나라의 안보 상황이 엄중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법안의 경우, 안보를 공고히 하는 것과는 거리가 있는 의외의 법안들도 있었다. 특히, 이러한 법에는 국가정보원과 관련된 법들이 다수 포함되었는데, 국정원은 정부조직법 제17조에 근거한 대통령 직속기관으로서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보안 및 범죄 수사에 대한 사무를 담당하여 안보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기관이다. 그러나 일부 법안은 국정원의 권한을 약화시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입법부의 안보의지를 의심하게 하고 있다.

오병윤 전 의원이 발의한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안(2013.8.7.)’의 경우 국정원의 업무를 해외정보 부문에만 집중하도록 하고 국정원의 국회 통제를 강화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야당이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안’으로 발의한 일부 법안들도 국정원의 권한을 약화시키고 위축시키는 내용이 상당부분 포함되어 있다. 대표적으로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발의한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안(2013.6.27.)’의 경우, 국정원의 직무 범위를 국외로 조정하고 기관의 명칭도 ‘통일해외정보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정청래 의원이 발의한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2013.10.4.)’의 경우, 국정원이 통신제한조치를 실시하거나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을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국회정보위원회에 보고하는 내용이다. 기타 국정원 관련법안은 **【표 1】** 과 같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대테러방지 관련법 중 핵심법안이자 테러 및 국가안위에 중대한 위협이 되는 범죄 혐의자에 대한 감청을 가능하게 하는 ‘통신비밀보호법’은 현행법의 미비로 현실적용에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일부 야당에서 발의한 통비법 개정안의 경우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보다는 수사와 정보기관의 권한 남용 우려 및 인권침해에 주로 초점이 맞춰져 현실과 거리가 있는 법안도 다수 있었다. 2012년에 서영교 의원이 발의한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안(2012.11.2.)’의 주요 내용은 현행법상 수사목적 감청허가 조항에서 포함된 범죄를 계획한 자는 한정적으로 처벌하고 감청승인 요건을 강화시키는 것 등이다. 같은 명의를 송호창 의원안의 주요내용은 수사목적 감청 허가 조항에서 범죄계획자는 제외하고 수사목적 감청 대상범죄도 피의자로 축소하는 등 서영교 의원안과 큰 틀에서 유사하다 (**【표 1】** 참조).

치안과 국민안전을 담당하고 있는 경찰조직의 업무에 대해 현재의 불법시위 및 과도한 시위행태와 경찰의 입장과 거리가 있는 법안도 있었다. 이상규 전 의원이 발의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2014.4.10.)’의 내용은 ‘24시간 집회를 허용’하는 것이다. 이학영 의원이 발의한 ‘경찰관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2014.2)’, ‘전투경찰대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2014. 2)’의 경우 경찰이나 전투경찰관 대원의 의복에 소속, 계급, 성명을 표시하게 하는 것으로 이는 국민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활동 시에도 신분 표시 등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찰 및 전투경찰을 처벌할 수 있는 등 치안활동의 위축을 가져 올 수 있다. 기타 관련법은 【표 1】과 같다.

【표 1】 제19대 국회 대한민국 안보 관련 특이법안들

(법안기준: 2015.12.15./정당명은 2016.2.23.기준)

연번	대표발의자 (정당)	법률안	제안일자	심사진행 상태	주요내용
1	문병호 (국민의당)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	'15.07.21	소관위접수	현행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통신제한조치 승인권을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에게
2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	'14.02.10	소관위접수	국정원 개혁 및 국정원장 임명시 국회동의 및 입기제 도입
3	민병두 (더불어 민주당)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	'13.03.21	소관위심사	국가정보원의 국내정치활동에 관한 처벌강화와 정치활동에 관한 상급자 지시 거부 의무화
4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	'13.08.13	소관위심사	국가정보원의 정치 관여 등과 관련된 내부고발자를 보호하기 위한 비밀 엄수 조항의 예외규정을 신설
5	서영교 (더불어 민주당)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	'12.11.02	소관위심사	공권력에 의한 통신제한조치 규제
6	송호창 (더불어민주당)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	'14.01.16	소관위접수	통신제한조치 허가요건 강화, 위치정보추정자료 별도 규정
7	이학영(더불어 민주당)	경찰관직무집행법 일부개정	'13.07.16	소관위심사	집회 시위 현장에서 경찰관을 식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 진압시 신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함
8		전투경찰대 설치법 일부개정	'13.07.16	소관위심사	
9	임수경 (더불어민주당)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	'14.12.08	소관위심사	집회시 채증요건 강화 및 경찰장비의 법률적 명시
10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	'14.12.08	소관위심사	범죄수사를 위한 전기통신의 압수·수색·검증의 집행이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후 해당 가입자에게 통지되는 사항의 범위를 확대하여
11	진성준 (더불어 민주당)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	'13.06.27	소관위심사	국가정보원의 직무 범위를 조정하고, 기관의 명칭도 '통일해외정보원' 으로 변경

연 번	대표발의자 (정당)	법률안	제안일자	심사진행 상태	주요내용
12		국회법 일부개정	'13.06.27	소관위심사	국회정보위원회에 정보감독위원회를 신설해 국정원 감독
13		전기통신기본법 일부개정	'15.01.23	소관위심사	미네르바 보호법
14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	'15.05.29	소관위심사	외국-국제기구에 대하여 군사기밀을 제공·설명하는 경우 국제법적 구속력이 없는 합의에 해당하는 약정 방식으로는 불가능하도록
15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	'13.10.04	소관위심사	국가정보원이 통신제한조치를 실시하거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기적으로 국회 정보위원회에 관련 사항을 보고
16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	'14.12.09	소관위 심사	수사기관이 통신제한조치 등을 집행하면 그 집행이 있는 날부터 90일 이내에 수사대상이 된 기업자에게 수사기관이 집행한 내역을 통지
17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4.12.09	소관위심사	집회·시위에 대한 채증활동의 대상이나 목적 등을 법률에 명시
18					
19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	'15.08.28	소관위접수	감청의 정의에 소프트웨어 포함, 소프트웨어도 인가, 신고, 허가 등 규제 신설
20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	'15.08.21	소관위접수	정보기관의 감청설비 폐기에 대한 사후관리로 정보 위원회에 통보 및 증빙자료 요구시 즉시 제출
21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	'15.11.16	소관위접수	명백하고 현존하는 국가안보상의 위해가 있는 경우에만 통신자료제공 요청할 수 있도록
22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	'13.03.18	소관위접수	불법 감청 등을 통하여 생성된 정보이지만 공개한 내용이 진실한 사실로서 국민이 알아야 할 공익성·공공성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처벌을 면하도록 위법성조각사유를 규정
23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	'13.10.08	소관위심사	국정원 직무범위를 국가안전보장과 남북통일 위한 국내 보안정보 및 해외정보 수집과 국가 기밀에 속하는 사항에 대한 보안 업무로 한정, 기관 명칭도 '통일해외정보원'으로 변경
24	장병완 (국민의당)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	'15.10.14	소관위심사	모든 국가기관은 반기별 감청장비 보유현황 미청부장관에게 통보, 장관은 반기별로 국회 소관위에 보고
25	김영환 (국민의당)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	'15.09.02	소관위접수	송·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의 압수·수색·검증도 현행법에 직접 규정하고 영장주의에 의하도록 함으로써 사이버 공간에서 정보인권을 보장
26	최원식 (국민의당)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	'15.08.21	소관위접수	감청·감청설비의 도입에 따른 국민의 인권침해 및 국회의 통제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의 허가 또는 대통령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통신제한조치를 한 경우 및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감청설비에 대해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

연 번	대표발의자 (정당)	법률안	제안일자	심사진행 상태	주요내용
27	오병윤(옛 통진당)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	'14.01.16	소관위접수	통신제한조차 허가요건 강화, 위치정보추정자료 별도 규정
28	이상규(옛 통진당)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4.04.10	소관위접수	24시간 집회 허용

※ 출처: 국회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

2. 국회보안법 위반 전력이 있는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들

과거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만으로 의원의 입법 활동에 제약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나 19대 국회에서 보여준 옛 통진당 사태는 법을 만드는 국회가 대한민국의 정체성 지키는 당연한 일에 대해 일반 국민들로부터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기에 충분했다. 과거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이 있는 국회의원 상당수는 이른바 ‘운동권’ 출신이며 대부분은 공식적으로 전향을 선언한 적이 없다.

이들이 발의한 법안의 특징을 살펴보면, 몇가지 공통점이 있다. 우선 과거 민주화 운동을 한 세력들에 대한 특별법에 관련된 것들이 한 가지 특징으로 나타났다. 강기정 의원이 발의한 ‘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안(2013.2.14.)’은 무죄판결을 받았으나 보상청구 기간을 해태하여 보상을 받지 못하는 ‘5·18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을 구제하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강의원은 또한 ‘국가기념일이 기념곡 지정 등에 관한 법률안(2015.4.30.)’을 통해 ‘임을 위한 행진곡’, ‘잠들지 않는 남도’ 등을 국가 공식 기념곡으로 지정하는 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김정협 의원의 ‘군사정권에 의한 재산권 침해의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안(2012.8.22.)’은 군사정권에 의해 재산권 등을 침해받은 피해자에 대한 물질적 보상에 관한 내용이다. 정청래 의원이 발의한 ‘유신헌법 긴급조치로 인한 피해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2012.10.16.)’은 유신헌법 하 긴급조치로 민·형사상 피해를 입은 자 및 가족들에 대한 배보상 관련 내용이다. 이학영 의원이 발의한 ‘민주화 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2013.3.11.)’은 유죄판결 및 해직당한 사람에게도 ‘국가의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책임을 한다는 내용이다.

두 번째 특징은 앞서 살펴본바와 같이 국가정보원 및 경찰 등 수사나 안보관련 기관에 대한 직무 범위 조정 등에 관한 법이다. 세 번째 특징은 현재 금지되어 있는 공무원의 정치활동 제한을 없애는 법들이다. 이상규 전 의원이 발의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2012.9.6.)’,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2012.9.6.)’, ‘정당법 일부개정(2012.9.6.)’,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2012.9.6.)’은 공무원의 노조활동, 정당가입 및 정치활동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강기정 의원의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2012.9.7.)’,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2012.9.17.)’, ‘정치자금법 일부개정(2012.9.17.)’,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2012.9.17.)’,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2012.9.1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2012.9.17.)’ 등도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활동 범위를 확대시키는 내용이다. 기타 관련법은 **【표 2】** 와 같다.

네 번째 부류는 북한관련이다. 남북 관계 및 북한의 인도적 지원에 관한 것으로 심재권 의원이 발의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2014.11.5.)’은 북한으로 전단살포를 금지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며, ‘북한인권증진법안(2014.4.28.)’은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북한주민모자보건 지원에 관한 법률안(2013.11.4.)’도 북한의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관한 내용이다. 이외에도 윤후덕 의원의 북한민생인권법안, 남북교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정청래·임수경 의원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 있다(**【표 2】** 참조).

【표 2】 대한민국 정체성 보호와 거리가 있는 법안

(법안기준: 2015.12.15./정당은 현재)

연번	의원명 (정당)	법률안	제안일자	심사진행 상태	내용	비고
1	노회찬 (정의당)	공직선거법일부개정	'12.07.26	소관위심사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	의원직상실
2	오병윤 (옛 통진당)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	'14.02.26	소관위심사	정당해산심판절차에도 형사소송법절차를 준 용	의원직상실 (통진당해산)
3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	'13.08.07	소관위심사	해외정보원으로만 활동하며 수사권을 분리 하며, 국회의 통제를 강화	
4	이석기 (옛 통진당)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	'13.06.20	소관위심사	종편에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부과 의무 화(현행 납부면제)	의원직상실 (통진당해산)
5		방송법 일부개정	'13.06.20	소관위심사	종편도 지상파방송과 같은 규제 적용	
6	김제연 (옛 통진당)	차별금지법안	'12.11.06	소관위심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서의 차 별금지와 실효적 차별구제수단 도입	의원직상실 (통진당해산)
7	이상규 (옛 통진당)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4.04.10	소관위접수	24시간 집회 허용	의원직상실 (통진당해산)
8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	'12.09.06	소관위심사	공무원의 노조활동, 정당가입 및 정치활동 자유 화	
9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	'12.09.06	소관위심사		
10		정당법 일부개정	'12.09.06	소관위심사		
11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2.09.06	소관위심사		

연 번	의원명 (정당)	법률안	제안일자	심사진행 상태	내용	비고
12	강기정 (더불어민 주당)	국가기념일의 기념곡 지정 등에 관한 법률안	'15.04.30	소관위접수	임을위한 행진곡, 잠들지 않는 남도 등 노래 기념곡으로 지정	
13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2.09.17	소관위심사	교원의 노동조합에 금지된 정치운동 범위 확대	
14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	'12.09.17	소관위심사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활동의 범위 확대	
15		정치자금법 일부개정	'12.09.17	소관위접수		
16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	'12.09.17	소관위심사		
17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2.09.17	소관위심사		
1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	'12.09.17	소관위접수	국회의원 지역구별로 생활정치센터 마련	
19		정당법 일부개정	'13.02.14	소관위접수		
20		정치자금법 일부개정	'13.02.14	소관위접수		
21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3.12.04	소관위심사	무죄재판을 받았으나 보상청구의 기간을 해태하여 보상을 받지 못하는 5·18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의 구제
22	김경협 (더불어민 주당)	군사정권에 의한 재산권 침해의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안	'12.08.22	소관위심사	군사정권에 의한 국민 재산권 침해의 진상을 규명하고 그 피해자에게 적절한 보상을 함과 동시에 침해재산에 터 잡아 현재에 이른 자산 등에 대하여는 사회환원조치	
23	민병두 (더불어민 주당)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2.11.16	대안변영폐기	국가유공자단체도 직접 수익사업 가능	
24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	'13.03.21	소관위심사	국가정보원의 국내정치활동에 관한 처벌강화와 정치활동에 관한 상급자 지시 거부 의무화	
25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	'13.08.13	소관위심사	국가정보원의 정치 관여 등과 관련된 내부 고발자를 보호하기 위한 비밀 업무 조항의 예외규정을 신설	
26	박홍근 (더불어민 주당)	남북한 의회기구 및 국회의원 교류협력에 관한 특별법안	'14.08.29	소관위심사	여야가 합의하여 추진하는 의회기구 및 국회의원의 대북접촉 특별법	
27	서영교 (더불어민 주당)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	'12.11.02	소관위심사	공권력에 의한 통신제한조치 규제	
28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진실규명결정 사건 관련자 보상에 관한	'13.12.02	소관위심사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진실규명결정을 한 8,450건의 과거사 관련 사건에 대하여 민사소송절차를 통하지 않고	

연 번	의원명 (정당)	법률안	제안일자	심사진행 상태	내용	비고
		법률안			일률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법률을 제정	
29	이인영 (더불어민 주당)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5.11.05	소관위심사	노동조합 가입 기준 확대(5급 이하)	
30	정청래 (더불어민 주당)	유신헌법 긴급조치로 인한 피해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	'12.10.16	접수	유신헌법 체제 당시 긴급조치로 인하여 형 사상·민사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및 그 유족에 대하여 보상 및 지원	
3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2.11.26	소관위심사	집회 신고 후 미 개최 시 취소신고서 접수, 신고없이 미개최시 신고한 집회기간 동안 집회 시위 개최 불가	
32		국회법 일부개정	'13.03.21	소관위심사	정부가 조약 등 체결 전 해당 조약 내용을 국회에 제출	
33		공 공 기 관 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3.05.09	대안비영폐기	국가안전보장 및 보안업무 등의 정보를 관 장하는 기관에서 수집하거나 작성된 정보를 원천적으로 비공개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	
34		국 가 정 보 원 법 일부개정	'13.10.04	소관위심사	국가정보원이 통신제한조치를 실시하거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한 사항에 대 하여는 주기적으로 국회 정보위원회에 관련 사항을 보고	
35		국회법 일부개정	'13.10.04	소관위심사	정보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 록 하고, 비공개로 실시된 회의는 그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하지 못하도록	
3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3.12.06	소관위심사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합동신문센터의 조사 과정에서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국가정보원장이 실시하는 임시 보호의 내용 등을 현행법에 명확하게 규정	
3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	'14.02.12	소관위심사	국가기관의 조직적인 선거운동 금지를 명확 히 하고 대통령선거에 있어서는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뿐만 아니라 선거 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선거대책기구 대표자의 선거범죄에 대해서도 해당 후보자 의 당선을 무효화	
38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4.12.09	소관위심사	집회·시위에 대한 채증활동의 대상이나 목 적 등을 법률에 명시		

연 번	의원명 (정당)	법률안	제안일자	심사진행 상태	내용	비고
39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	'14.12.09	소관위접수	개인정보에 대한 헌법상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통신자료의 제공에 대해서는 법원의 압수수색영장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절차를 강화하고 통신제한조치 등의 집행에 대한 사항을 기재한 대장을 일반에 공개	
40	진성준 (더불어민 주당)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	'13.06.27	소관위심사	국가정보원의 직무 범위를 조정하고, 기관의 명칭도 '통일해외정보원' 으로 변경	
41		국회법 일부개정	'13.06.27	소관위심사	국회정보위원회에 정보감독위원회를 신설해 국정원 감독	
42		전기통신기본법 일부개정	'15.01.23	소관위심사	미네르바 보호법	
43		군사기밀 일부개정	보호법	'15.05.29	소관위심사	외국-국제기구에 대하여 군사기밀을 제공·설명하는 경우 국제법적 구속력이 없는 합의에 해당하는 약정 방식으로는 불가능하도록
44	심재권 (더불어민 주당)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4.11.05	소관위심사	전단살포 금지	
45		북한인권증진법안	'14.04.28	소관위심사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46		북한주민 모자보건 지원에 관한 법률안	'13.11.04	소관위심사	북한 영아와 산모에 대한 지원	
47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	'12.11.29	소관위심사	5.24조치로 인한 기업 손실에 대한 보상	
48	이학영 (더불어민 주당)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3.03.11	소관위심사	유죄판결-해직을 받은 에게도 국가의 불법 행위에 대한 배상책임을 별도로 성립	
49		경찰관직무집행법 일부개정	'13.07.16	소관위심사	집회 시위 현장에서 경찰관을 식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 진압시 신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함	
50		전투경찰대 설치법 일부개정	'13.07.16	소관위심사		
51	최규성 (더불어민 주당)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13.04.15	소관위심사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유족에게도 독립유공자 유족과 유사하게 국가가 보상금 등을 지급	
52	윤후덕 (더불어민 주당)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12.07.06	소관위심사	남북 교류차원에서 평화경제특별구역을 지정	
53		북한민생인권법안	'13.07.25	소관위심사	식량, 의약품 등 지원	
54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4.11.12	소관위심사	대북전단 살포 금지	

연 번	의원명 (정당)	법률안	제안일자	심사진행 상태	내용	비고
55	입수경 (더불어민 주당)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일부개정	'13.01.30	소관위심사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사업 및 지원금액 등 의 결정에 관한 사항을 국회에 보고	
56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3.02.12	소관위접수	국무회의 등 주요장관 회의도 의무적 속기 록 작성	
57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3.09.12	대안변영폐기	탈북자 영농 정착 지원 확대	
58		전 기 통 신 사 업 법 일부개정	'14.12.08	소관위접수	전기통신 이용자의 프라이버시권 등을 보호 하기 위하여 검사, 수사관서의 장 및 정보수 사기관의 장이 통신자료제공을 받은 경우에 는 대상이 된 이용자에게 일정 기한 내에 서면 통지	
59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	'14.12.08	소관위심사	집회시 채증요건 강화 및 경찰장비의 법률 적 명시	
60		통 신 비 밀 보 호 법 일부개정	'14.12.08	소관위심사	범죄수사를 위한 전기통신의 압수·수색· 검증의 집행이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후 해당 가입자에게 통지되는 사항의 범위를 확대하여	
61	은수미 (더불어민 주당)	노 동 인 권 교 육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15.04.06	소관위심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노동인권교육에 관 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학교와 사회 에서 노동인권교육이 활성화	

※ 출처: 국회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

Ⅲ 맺는 말

국회는 삼권분립의 한 축인 입법부로 우리나라 헌법 가치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
제 체제 수호의 의무가 있으며, 국회를 구성하는 국회의원은 헌법적 가치가 존중되
어 법치가 실현 될 수 있도록 도모하는 입법 활동을 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 법안들의 경우, 국가안보와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가치와 거리가 먼 법
안들도 있었다. 19대 국회는 국회 내에서 반국가이적활동을 일삼아온 정당 및 의원
들이 법의 심판을 받은 만큼 국회에 발의된 법안들에 대해 국가존립의 기본적인 가
치를 실현하는 법인지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실제로 일부 법률안의 경우, 국
가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정보기관이나 수사기관의 권한을 약화시키고 공무원의 중
립의 의무와 거리가 있는 법 등이 발의된 만큼 이러한 법률안의 처리 여부에 관심
을 가지고 꾸준히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